

# 팁스(TIPS)

- 추천 및 선정평가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Contents

1 ▶ 평가일정 및 주요 안내사항

2 ▶ 창업기업 신청자격

3 ▶ 창업기업 선정평가

4 ▶ 추천서류

5 ▶ 연구개발비(R&D)

6 ▶ 연계사업 통합평가



TIPS TOWN



# 1. 평가일정 및 주요 안내사항



## '22년 4월 추천 및 평가 일정

**3 March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4월 추천 및 평가교육	4	5
6	7 4월 추천 수요조사 마감 (~13:00)	8	9 대통령 선거	10	11	12
13	14	15	16 4월 추천마감	17	18 4월 과제신청	19
20	21	22	23 4월 과제 접수마감	24	25	26
27	28	29 4월 투자검증위	30 4월 투자검증위	31 4월 투자검증위		

**4 April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4월 서면평가	5 4월 서면평가	6 4월 서면평가	7 4월 서면평가	8 4월 서면평가	9
10	11 4월 대면평가	12 4월 대면평가	13 4월 대면평가	14 4월 대면평가	15 4월 대면평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추천·선정평가 교육 : 3.3(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천 및 선정평가에 대한 온라인 교육 진행
- 대상 : 운영사 및 추천 예정 창업기업 실무담당자

○ **추천수요조사마감 : ~3.7(월) 13시 까지**

- 추천여부, 추천 예정 창업기업 정보 등을 기재한 설문지 제출
- 창업기업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미추천'으로 기재하여 제출
- 평가장 확보 및 분과 구성을 위해, 기한 내 제출 요청

○ **창업기업 추천마감 : ~3.16(월) 16시 까지**

- 창업기업 추천서류 이메일 제출(운영사→운영기관)
- ①추천공문 ②창업기업 추천 현황 ③투자계약서(확약서), ④투자검토보고서 ⑤사업자등록증 ⑥투자금 유형(엑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고 제출 가능
- 제출시간 미준수 혹은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추천접수 불가능

○ **SMTECH 과제 접수 : 3.18(금) ~ 3.23(수) 18시 까지**

- SMTECH 온라인 과제 신청(창업기업→SMTECH)
- 정해진 기간 외 시스템 상 과제신청 불가. 마감시간 준수 필수
- 접수 마감 당일 시스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필요
- 추천 이후 온라인 과제 미신청 시 요건탈락 처리(추천권 소진)
- 과제신청 방법은 SMTECH 과제 신청 매뉴얼\* 참고 필수
- \* SMTECH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22년 4월 추천 및 평가 일정

**3 March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4월 추천 및 평가교육	4	5
6	7 4월 추천 수요조사 마감 (~13:00)	8	9 대통령 선거	10	11	12
13	14	15	16 4월 추천마감	17	18 4월 과제신청	19
20	21	22	23 4월 과제 접수마감	24	25	26
27	28	29 4월 투자검증위	30 4월 투자검증위	31 4월 투자검증위		

**4 April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4월 서면평가	5 4월 서면평가	6 4월 서면평가	7 4월 서면평가	8 4월 서면평가	9
10	11 4월 대면평가	12 4월 대면평가	13 4월 대면평가	14 4월 대면평가	15 4월 대면평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 3.29(화) ~ 3.31(목)

○ 서면평가: 4.4(월) ~ 4.8(금)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4.11(월) ~ 4.15(금)

- 서면평가 의견을 반영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PART2 & 부록 시스템(SMTECH) 제출
- 정확한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 예정
- 기한 미준수 및 미제출 시, 기존서류로 대면평가 진행

○ 대면평가: 4.11(월) ~ 4.15(금)

- 대면평가 발표시간은 평가 전 개별 안내 예정

※ 각 평가일수는 추천 창업기업 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변동 시 재안내)

## '22년 4월 추천 주요 안내사항

### ✓ 추천 절차

#### < 팁스 추천 시 제출자료 >

구분	내용	제출자료
[운영사 제출] 추천마감일 (이메일)	운영사에서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추천 접수기간의 마감일	①추천 공문 ②창업기업 추천현황(양식), ③투자계약서(확약서) ④투자검토보고서 ⑤사업자등록증 ⑥추천 창업기업 정보 및 투자금 유형(엑셀) * 제출처 : <a href="mailto:jointips@kban.or.kr">jointips@kban.or.kr</a>
[창업기업 제출] 접수마감일 (시스템 접수)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내 서류 제출 기간의 접수마감일	접수마감일 제출 서류 일체(4. 추천서류 참고)

\*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내 필수서류(연구개발계획서 등)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22년 4월 추천 주요 안내사항

### ✓ 투자요건

#### □ 투자금 인정 기간

- (기존) 투자계약일이 창업기업 추천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변경) 투자계약일이 창업기업 **추천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추천마감일) 운영사에서 운영기관(엔젤투자협회)으로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기간의 마감일**

#### □ 프리팁스 연계 강화

- 운영사에서 비수도권 소재의 프리팁스 기업 팁스(R&D) 추천 시,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된 투자금액 중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도 **先 투자금으로** 합산 인정
- 증빙서류 : 프리팁스 표준협약서, 투자금 인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투자 유형(고유계정형, 펀드형)과 관계 없이 인정투자금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매칭 비율 1:5로 고정
- 단, 운영사는 인정된 투자금의 50%이상을 투자해야함

## ■ '22년 4월 추천 주요 안내사항

### ✓ 평가 절차

#### □ 선정평가 절차 전문화

- (기존) 운영사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의 전문적 설명을 위해 창업기업 대표자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변경) 운영사 대표자 또는 투자 담당 심사역이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의 전문적 설명을 위해 창업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 패스트트랙

- 서면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점을 받은 창업기업의 경우, 대면평가를 생략하여 즉시 선정·협약 진행
- \* 성과 우수 운영사를 대상으로 배정된 기업 추천권의 10%를 '패스트트랙 추천권'으로 별도 부여



## ■ '22년 4월 추천 주요 안내사항

### ✓ 가점 인정 기준

#### □ 최대 3점 인정

번호	내 용	제 출 자 료	가 점
1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기업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입주를 약속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SMTECH 내 '창업기업 비수도권 소재 약속서' 제출	2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기업이 선정 후 해당 지역에 <b>본사가 소재하는 경우</b> (연구소 및 지사 불인정) • 지정된 보육공간(대전 팁스타운, 운영사 BI, (지방)창조경제혁신센터)에 <b>본사가 소재</b>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종료 전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협약 해약		
2	신성장 육성 분야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디지털·비대면)	추천서 제출 시, 세부 분야-품목 혹은 중점기술을 정확히 기재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여부 판단	1
	*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디지털·비대면 분야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 동시에 3개 분야에 해당할 경우 모두 기재하며, 신청 분야 중 1개 분야만 해당되어도 인정 (단, 각 분야별 해당 세부 분야-품목, 중점기술 1개만을 정확하게 기재)		
3	내일채움공제 도입·운영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제출	1
	* 연구개발기간 동안 내일채움공제 가입 유지		
4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공' 기업	프리팁스 또는 팁스-R 성과평가 결과 공문 제출	1

## ■ '22년 4월 추천 주요 안내사항

### ✓ 기타 사항

□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전략형, 틱스) 중 연도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 구분 없이 연 1회 신청 가능

예시)

신청 사업	선정결과	'22년 틱스(TIPS) 신청가능 여부
'21년 디딤돌(첫걸음)	탈락	- 틱스 신청가능
	선정	- 틱스 신청가능(동시수행불가) * 단 디딤돌 과제 잔여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만 동시수행가능
'22년 디딤돌(첫걸음)	탈락	- 틱스 신청불가(신청횟수 제한) * 사업 구분 없이 연 1회 신청 가능
	선정	
'22년 전략형(디지털혁신)	탈락	- 틱스 신청불가(신청횟수 제한) * 사업 구분 없이 연 1회 신청 가능
	선정	
'22년 틱스	탈락	- 창업기업 추천권을 사용하여 재신청 가능 * 단 창업기업별 1회, 운영사별 연간 3회 신청 가능

□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통합평가 실시

\* 추천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연구개발비소요명세 등 추천서류 작성시 연계지원사업 관련 내용 작성

## ■ '22년 4월 추천 주요 안내사항

### ✓ 기타 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Part2) 작성 분량 제한

- 원활한 평가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Part2) 분량을 5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지정 분량인 50페이지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항목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50페이지 이후 '붙임'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주의 필요

\* 단,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관련 내용은 페이지 제한없이 작성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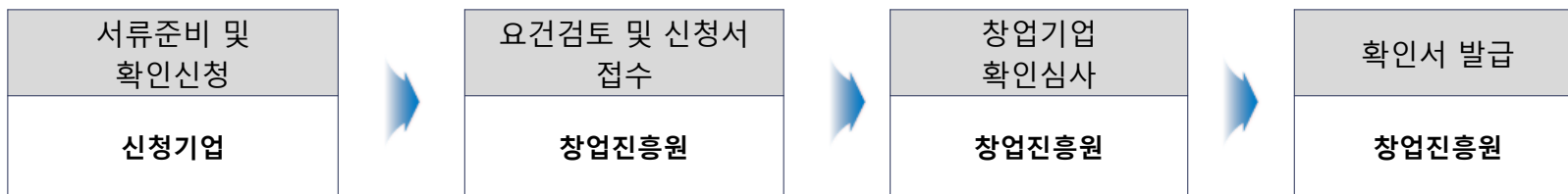
####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안내 메일에 첨부한 최신화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및 제출

**※ ※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 ※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 소요)**

\* 창업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 (<https://cert.k-startup.go.kr>)



## 2. 창업기업 신청자격

---

## ■ 신청자격(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사업 기준으로 업력 적용)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법인 전환, 법인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 변경하여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으로 구성(투자자, 어드바이저, 등기이사 등 제외)
  - 운영사 투자 후 기준,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창업기업원이 60% 이상 지분 보유**

**\* 대표자 단독 지분 불가**
  
- 대표자가 해외국적자일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고용조건) 국내 법인의 50% 이상을 국내 국적자로 고용, 사업기간 동안 유지
  - (매출조건) 틱스 지원 이후 국내 법인을 통한 매출 시현 및 유지.운영 계획을 제출
  
- 창업기업 희망 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운영요령 제16조 1항에 의거,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 ■ 신청자격(지원 제외 대상)

-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 팁스 기본 목적, 공고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유흥업, 향락업, 사행산업 등)
- 기개발/기지원 여부 : 신청 과제가 기개발/기지원 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서면평가 전까지 해소한 경우 예외)
- 참여제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 과제수 : 과제책임자 동시수행과제 최대 3개, 참여연구원 최대 5개 초과인 경우
- 당해연도 지원과제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계속과제 포함 최대 2개가 초과된 경우
  - \* 졸업제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 종료 시까지 팁스 신청 불가
- 참여횟수 제한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 팁스 중복 수혜 불가 : 프리팁스, 팁스-R을 수행중인 경우
  - \* 팁스 수혜 후 프리팁스 지원 불가
  - (단, 프리팁스 종료 후 팁스 지원이 가능하며, 투자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운영사 투자금 중복 인정)

## ■ 신청자격(지원 제외 대상)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서면평가 전까지 해소 또는 체납처분 유예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서면평가 전까지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 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신청자격(지원 제외 대상)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과제 신청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팁스 성공 조건 기달성 : 매출액 또는 누적투자금액 등 **팁스 완료(성공) 조건을 초과**한 경우
- 내역사업 수행 :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先** 상위 단계 내역 사업 수행 후, **後** 하위단계 내역 사업은 수행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팁스 총괄운영지침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참조**
- \* **운영요령 제16조 1항에 의거,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 3. 창업기업 선정평가

---

## ■ 선정평가 절차

01

창업기업 추천

- 창업기업 추천서류 이메일 제출마감(운영사→운영기관)
- 추천서류 : 추천공문, 추천현황, 투자계약서(확약서), 투자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금 정보(Excel)

02

SMTECH 과제신청

- SMTECH 온라인 과제신청(창업기업→SMTECH)
- 추천서류 일체 제출(업로드)

03

사전 검토

-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요건탈락 통보

04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 투자계약서(확약서), 투자검토보고서, 주주간계약서(해당시)를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검토

05

서면평가

- 창업기업의 역량, 기술의 우수성, 운영사 지원계획 등 검토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 여부 결정

## ■ 선정평가 절차

06

서면평가 결과통보

- 글로벌진출전략 부재, 항목별 과락제에 따른 대면평가 제외대상 통보
- 평가위원별 점수 증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

07

대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에 의한 보완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
- 운영사의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

08

최종결과 통보

- 서면평가 40% + 대면평가 60% + 가점 최대 3점으로 종합평점 산정
-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및 최종선정과제 통보

09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재심의)

- 선정 창업기업 중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 체결 필요 통보 및 해당 내용 검토

10

협약체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서류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SMTECH)
  - 운영기관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 후 2자간\* 협약 체결
- \*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 전문기관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창업기업 추천

#### □ 창업기업 추천 방법

- 운영사에서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확약) 이후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 추천
  - (추천) 운영사가 '추천마감일'에 운영기관 이메일로 창업기업 추천(추천서류 6종 제출)
  - (접수) 추천 창업기업이 '접수마감일'까지 SMTECH에 과제 신청(접수마감일 서류 일체 제출)

#### □ 운영사 투자 기준

- 투자 계약일은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펀드형 투자를 통해 추천한 경우, 의무 민간 투자금 2억원 이상
- **2차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창업기업 추천 시 투자계약(확약)서에 투자금액 및 납입일 기재 필수
- 창업기업 과제의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성 시, 현물 투자 등을 일부 투자 실적으로 인정
- 연간 창업기업 추천권 T/O의 20% 내에서 투자확약서 제출 가능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SMTECH 과제신청

- 회원가입 대상 : 각 기관 별,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자 전원 가입
  - (창업기업) 대표(=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운영사) 대표, 책임자, 코디네이터,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 소속기관 등록
  - SMTECH 마이페이지 기관정보관리에서 팁스 신청 창업기업으로 소속기관 등록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체명 : 중기\_예비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100-00-00000
  
- 팁스 코디네이터 등록(운영사)
  - 운영사는 SMTECH 내 기관 대표ID 로그인 후 코디네이터 정보에 팁스 담당자 정보 등록
    - \*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관리] - [기관별 과제관리자 지정] - [코디네이터 등록]
    - \* 창업기업은 과제신청 시, '운영사' 기관정보만 등록(별도의 코디네이터 담당자 등록 없음)
    - \* 운영사 코디네이터 담당자 미등록시, 서면평가의견, 평가결과 등 통보불가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SMTECH 과제신청 - 전산 동의

#### □ 참여연구자의 과제신청 동의서 작성

○ (참여연구자)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신용상태 정보 동의서

○ 참여연구자 개별 ID 로그인 후 **동의처리를 완료해야 과제 제출 가능**

\* 참여연구자의 SMTECH 사전 가입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체크 필요

\* 참여연구원 등록 대상자 전원 개별 ID 로그인 후 과제신청 동의 작성 필요(미동의 시 과제제출 불가)

과제신청

과제계획 +

과제신청 -

- 과제 참여횟수 조사
- 과제신청 안내
- 과제신청
- 과제 신청내역 조회
- 맞춤형 기술파트너 신청
- 스마트센서 과제신청
- 일자리평가 동의여부
- 과제신청 동의서 작성

### 과제신청

홈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과제신청

Step1 / 주관연구개발기관정보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

Step2 /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Step3 / 연구개발비 제출서류 등록

과제번호	
과제명	

• 동의서 현황

- ※ 아래 동의서별 대상자가 모두 동의처리를 하여야 과제제출이 됩니다.
- ※ 동의서 작성화면은 '과제신청 > 과제신청 동의서' 작성화면에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 중소벤처24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벤처24 사업신청 페이지 상단의 과제신청동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의서 동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제번호	동의여부
[중소기업기술개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총인원 : 1, 동의인원 : 0
[청렴 서약서]	총인원 : 1, 동의인원 : 0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사전 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확인
  - 매출액 및 부채비율(전년도 결산 기준), 팁스 성공조건 기 달성 여부
  - 대표자의 참여제한 여부
  - 신청 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
  -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요건탈락 통보

### ✓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 투자계약 내용 검토
  - 투자계약서(확약서), 투자검토보고서, 주주간 계약서(해당시)를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검토**
  - 위원별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에 대한 적합 여부 결과 통보
  - **시정사항에 대한 수정 투자계약서를 대면평가 전까지 제출 필요**
    - 수정 투자계약서는 확약서, 소명서, 공문 등으로 대체 가능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서면평가

- 기술, 사업화 분야의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 창업기업의 역량 및 기술의 우수성, 운영사 지원계획, 글로벌 진출전략 등 검토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 여부 결정
  - \* (제외대상) 글로벌진출전략 부재하거나 미흡, 평가항목별 최소기준 점수 미 충족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
  - 서면평가 의견 중 보완사항을 창업기업, 운영사에 통보하여 대면평가 전까지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 패스트트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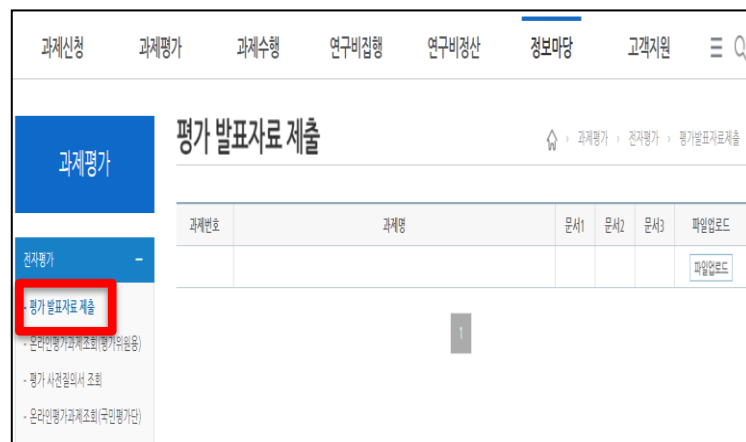
- 추천된 창업기업 중 서면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점을 받은 창업기업의 경우, 대면평가를 생략하여 즉시 선정·협약 진행
- \* 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매출액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 검토 절차 진행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발표자료가 아닌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 보완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수정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 '기타자료(해당 시)'를 제출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직접제출(업로드)**
  - 서면평가 보완의견 통보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료제출란 생성 예정
  - \* [SMTECH] - [과제평가] - [전자평가] - [평가발표자료 제출] - [파일업로드]
  - \* 수정연구개발계획서는 **대면평가 당일 오전 10시 제출 마감**(기한 초과 시, 기존자료로 평가 진행)
  - \* 제출자료는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최대 50MB) (**PDF 보안 설정 시 열람 불가**)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대면평가

- 보완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사(시장성), 창업기업(기술성) 각각 발표 가능
  - \* 운영사 발표 시 대표자 또는 투자 담당자 발표 가능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과제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진행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
- 대면평가 종료 이후 운영사 및 창업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 진행

### ✓ 평가위원 역평가

- 팁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피평가자 역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리 추진
- 대면평가(온라인) 종료 후 **운영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평가 URL 송부**(2개의 역평가)
  - URL 1 :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평가위원 역평가
    - \*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자체적인 역평가 항목으로, 피평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 내 평가위원 정보관리 등 반영
  - URL 2 : 팁스(TIPS) 평가위원 역평가
    - \* 팁스 역평가 체계 강화를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조사이며, SMTECH 역평가 내용과 별도로 위원관리 진행
- 운영사는 창업기업과 **논의 후 설문 참여 필수**

## ■ 선정평가 절차별 세부내용

###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서면평가 40% + 대면평가 60% + 가점 최대 3점으로 종합평점 산정
-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선정(선정 안내 후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
- 최종선정여부(선정/후보) 통보 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참고사항>

- 재도전평가(후보 창업기업)
  - 후보 창업기업의 경우 재도전 의사 확인 후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재도전 신청
  - 대면평가 절차와 동일
  - 선정평가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 종합평점 = 대면평가 100% + 가점 최대 3점
  - 지원대상 확정 후 최종 선정여부(선정/탈락) 통보
  - 재도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불가
- 재신청(탈락기업)
  - 종합평점 60점 미만 탈락기업의 경우 **운영사 추천권(T/O) 소진 후** 재추천 가능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보완 가능
  - 재추천 횟수는 **창업기업별 1회, 운영사별 연간 3회**로 제한

## 4. 추천서류

---



## ■ 창업기업 추천서류 목록\_추천마감일 제출서류(이메일)

구분	제출서류	추천마감일 제출서류(이메일)	비고
필수	추천 공문	○	
필수	팁스(TIPS) 기술 창업기업 추천현황	○	
필수	팁스 추천 창업기업 정보 및 투자금 유형(Excel)	○	
필수	투자계약서(또는 확약서)	○	
필수	투자검토보고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	

## 창업기업 추천서류 목록\_접수마감일 제출서류(SMTECH)

구분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제출서류(SMTECH)	비고
필수	팁스 기술창업기업 추천서	○	
필수	팁스 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계획서 Part1	-	SMTECH 자동생성
필수	팁스 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계획서 Part2 & 부록	○	(PPT 양식)연구개발계획서 50페이지 이내
필수	투자계약서	○	
필수	팁스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	○	
필수	운영사 투자 후 주주명부(투자확약의 경우 가안 제출)	○	
필수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필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SMTECH 내 전산동의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빈문서' 제출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빈문서' 제출
필수	(전)전년도 확정 재무제표(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	- 국제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공증) 기준 - 전년도 미결산시, 공증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창업기업확인서(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빈문서' 제출
해당시	투자확약서	○	
해당시	주주간 계약서	○	
해당시	기술교류 네트워크링 계획서(현물출자 계약서, 가치산정 근거자료)	○	현물투자가 있는 경우 제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도입계획서/도입심의요청서	○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연구실운영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해당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자 등록요청서	○	
해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창업기업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	
해당시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과평가 결과 안내 공문	○	
해당시	프리팁스 표준협약서(투자금 인정 근거자료)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수행기업의 경우 제출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추천현황

팁스(TIPS) 기술 창업기업 추천현황

○ 운영사명 :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1	창업기업 소개 (설립배경, 구성원 등)		
	과제 주요 개발 내용 (기술소개, 최종개발목표 등)		
	운영사 추천 사유		

### ○ 팁스 기술 창업기업 추천현황

- 창업기업 추천 시, 추천현황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팁스 추천 창업기업 정보 및 투자금 유형(Excel)

2022년 팁스(TIPS) 추천 창업기업 정보 및 투자금 유형												
(단위:원)												
순번	운영사명	창업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제외 10자리)	운영사 투자금						현물 (d)	운영사 투자금 (총금액) a+b+c+d	운영사 투자금 (인정금액) a+b+c/2+d
				현금				공적자금비율 (공적자금펀드의 경우 기재)	공적자금펀드 (c)			
				고유계정 (a)	민간자금펀드 (b)	공적자금펀드 (c)	공적자금비율 (공적자금펀드의 경우 기재)					
예시	00인베스트먼트	(주)## or ##(주)	1234567890	###	###	###		###	-	#VALUE!		
1									-	-		
2									-	-		
3									-	-		
4									-	-		

\* 해당월 추천하는 창업기업 모두 기재  
\* 운영사 투자금은 해당하는 종류만 기재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외 10자리 필수 기재
-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기업명 : 중기\_예비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1000000000 기재

#### ○ 운영사 투자금

- 투자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필요(투자계약서와 금액 일치 필요)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기술창업기업 추천서

팁스(TIPS)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input type="checkbox"/> 연계사업신청	<input type="checkbox"/> 창업사업화	<input type="checkbox"/> 해외마케팅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공통대표 포함	
연락처(☎)	이메일		
과제명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소	원 소재지 기재		
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입주예정지(☎)	<input type="checkbox"/> 팁스타운 <input type="checkbox"/> (타)운영사 BI <input type="checkbox"/>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점 해당사항 (최대 3점)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서울·인천·경기 제외) 확약 (2점) * 본사기준 <input type="checkbox"/> 내일채움공제 도입 (1점) <input type="checkbox"/>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공 편정 기업 (1점)		
	<input type="checkbox"/> [신성장 육성 분야 (1점) * 해당사항 모두 기입 가능]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분야 - 전략중용)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분야(전략분야 - 전략중용) <input type="checkbox"/>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점기술)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재원	운영사투자금    창업기업누적투자금
	1차	<input type="checkbox"/> 고유 계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운영사 투자금 포함
2차예정	<input type="checkbox"/> 고유 계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주주현황 (자본% 국적)	투자비		투자액
	구분	주주명	지분율    국적
	창업기업		창업기업
	기타		기타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운영사 투자재원의 특성(재원 성격, 펀드 경우 모태 비율 등)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학 출연(연) 기술이전/출자(현물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수행 기업일 경우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에 프리팁스 신청 시 증빙한 투자액에 한함,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은 총 운영사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운영사 투자금으로 합산하여 기재 가능 <input type="checkbox"/> 회사 구조 기업경영 등에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경우 창업준비와 관련된 내용 기재 가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준을 준수하여 팁스 기술창업기업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운영사 : _____			
운영사 대표자 : _____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연계사업신청**
  -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항목 선택
- **기술분야**
  - 팁스 총괄운영지침 기술분류표 참조(산업기술분류표)
- **입주예정지**
  - 선정 후 입주 예정지 선택
- **운영사투자금**
  - 투자계약(확약)서와 동일하게 투자재원 선택
  - 운영사 투자금 현금 총액 기재
- **창업기업 누적 투자금**
  - 설립 이후 투자 받은 총 금액 기재(운영사 투자금 포함)
- **가점**
  -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가점을 체크하고 분야/품목을 정확히 기재
- **특이사항**
  - 투자재원 및 현물출자(해당시)에 대한 설명 기재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수행 기업일 경우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도 운영사 투자금으로 합산하여 기재 가능
- **기타사항**
  - 운영사 날인 필수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기술창업기업 추천서 - 가점(신성장 육성 분야) 입력 방법

팁스(TIPS)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input type="checkbox"/> 연계사업신청	<input type="checkbox"/> 창업사업화	<input type="checkbox"/> 해외마케팅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공통대표 포함	
연락처(팩)	이메일		
과제명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소	원 소재지 기재		
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입주예정지(팩)	<input type="checkbox"/> 팀스타운	<input type="checkbox"/> (타)운영사 BI	<input type="checkbox"/>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점 해당사항 (최대 3점)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서울·인천·경기 제외) 확약 (2점) * 본사기준		
	<input type="checkbox"/> 내일채움공제 도입 (1점)		
	<input type="checkbox"/>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공 판정 기업 (1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성장 육성 분야 (1점) * 해당사항 모두 기입 가능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분야 - 전략중용)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분야 - 전략중용) <input type="checkbox"/>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용기술)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투자채원	운영사투자금
	1차	<input type="checkbox"/> 고유 계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창업입주처투자금
	2차예정	<input type="checkbox"/> 고유 계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운영사 투자금 포함
주주현황 (자본% 국적)	투자비율		투자비율
	구분	주주명	지분율
	창업기업		
	기타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운영사 투자채원의 특성(채원 성격, 펀드 경우 모태 비유 등)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학·출연(연) 기술이전/출자(현물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수행 기업일 경우,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에 프리팁스 신청 시 증빙한 투자금액에 한함,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은 총 운영사 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도 <input type="checkbox"/> 회사 구조, 기업경영 등에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경우 창업준비와 관련된 내용 기재 가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준을 준수하여 팁스 기술창업기업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운영사 대표자 :	(인)

### ○ 신성장 육성 분야(1점)

- 각 항목별 1개의 분야에 대해 신청 가능(3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단, 한가지 항목에 2개의 분야를 기재하면 가점 불인정

- 각 분야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평가대상에 반영됨

- (예시)
- 4차 산업혁명 분야(인공지능 - AI 기반 교육서비스)
  - 소재·부품·장비 분야(기계금속 - 지능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 디지털·비대면 분야(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분야(23개 분야, 178개)	
전략분야	전략중용
인공지능 (9개)	신약개발 AI 플랫폼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AI 창작 플랫폼 인공지능 소재 설계 시스템 Edge-Device 기반 고성능 경량·고속 시각 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다국어 워드넷 확장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영상, 음성문서 등의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빅데이터 (8개)	AI 기반 교육서비스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AutoML 솔루션 Explainable AI(XAI) 통합 데이터 지도 기술 AI 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센터 공간정보분석 및 공간빅데이터 융복합 솔루션

소재·부품·장비 분야(9개 분야, 104개)	
전략분야	전략중용
기계금속 (17개)	지능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실린더 감속기 압연부품 금속 3D 적층/열식 장치 정밀생산기계부품 날돌오일 제강설비부품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제강소재 로봇용 서보모터 초경합 및 고강성용 기어는 금속 기반 이점형/비점형 소재 방열용 연소 장치 내열/내구/내식 부품 제조를 위한 진공 열처리용 장치

10대 디지털기술 및 비대면 기술분야		
구분	중점기술	주요내용
1	블록체인	• 분산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를 공유하여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로 블록의 특성을 강조 •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신분증 및 디지털자산
2	컴퓨터비전	• 인공지능 분야로 사람의 시각과 관련한 시스템 영상 등 시각 정보를 통해 물체나 상황을 생성하는 기술 •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소비자 경험 개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기술창업기업 추천서 – 운영사 투자 후 주주현황

**팁스(TIPS)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연계사업신청	해당없음		
창업팀명	대표자명	공동대표 포함		
연락처(TEL/F)	이메일			
과제명				
기술분야	내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소	원 소재지 기재			
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임주예정지(BI)	<input type="checkbox"/> 팀스타운 <input type="checkbox"/> (타)운영사 BI <input type="checkbox"/>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점 해당사항 (최대 3점)	<input type="checkbox"/> 지방 소재(석울·인원·경기 제외) 특약 (2점) * 본사기준			
	<input type="checkbox"/> 내일재용공제 도입 (1점)			
	<input type="checkbox"/>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팀스-R(TIPS-R) '성공' 인정 기업 (1점)			
	<input type="checkbox"/> 신성장 육성 분야 (1점) * 해당사항 모두 기업 가능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분야 (첨단분야 - 첨단제품)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분야(분야 - 내용)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분야 (구분 - 세부분야)			
	구분	투자계원	운영사투자금	창업기업 누적 투자금
1차	<input type="checkbox"/> 고유 제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운영사 투자금 포함
투자전				
구분	주주명	지분율	국적	구분
창업팀				창업팀
운영사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사 투자계원의 특성(제원 성격, 펀드 경우 모태 비윤 등) 기재</li> <li>○ 대학, 출연(원) 기술이전/출자(현물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li> <li>○ 회사 구조, 기업경영 등에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li> <li>○ 예비창업자 경우 창업준비와 관련된 내용 기재 가능</li> </ul>			

2021년 월 일

운영사 : \_\_\_\_\_  
 운영사 대표자 : \_\_\_\_\_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운영사 투자 후 주주현황

- 운영사 투자 후 주주명부(양식 준용)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각 분야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평가대상에 반영됨

**주 주 명 부**

주주명	주계종류	소유주지 수	금액	지분율 <sup>1)</sup>	구분 <sup>2)</sup>	국적
홍길동	보통주	주	원	10%	창업팀 대표	대한민국
김철수	보통주	주	원	10%	창업팀원	미국
한국벤처파트너스(주)	우선주	주	원	10%	운영사	대한민국
합 계		주	원	100%	원 주당 금액 : 100 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 00. 00.

주식회사 \_\_\_\_\_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

창업기업/운영사/기타 구분  
및 국적, 지분 현황 등  
모든 내용 동일하게 작성

1) 지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2) 창업팀 대표/창업팀원/운영사/기타 중 택일하여 기입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II. 해결방안 및 세부내용 (Solution & Technology)

2.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Technology & Goal)

<결과물의 성능지표> (작성 필수)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 최고수준 최유/보유기관 성능수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작성요령  
 - 주요성능 :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것을 의미  
 -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함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도전적 R&D의 경우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작성 가능)

<평가방법 및 환경> (작성 필수)

순번	평가항목(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작성요령  
 -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 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6

#### ○ 결과물의 성능지표

- 주요성능 :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
-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가중치 전체 합계는 100% 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
- \*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도전적 R&D의 경우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작성 가능

#### ○ 평가방법 및 환경

-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
-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글로벌 진출 전략

#### III. 사업화 전략 (Scale-up)

##### 3. 글로벌 진출전략

###### <글로벌 진출목표>

현지 창업	수출	현지매출	해외투자유치	기타
현지법인/합작법인/지점 /연락사무소				

###### <글로벌 진출 추진일정>

추진기간	사업추진 내용(과업)	비고

###### • 작성요령

- ※ 추가 연계지원사업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장표 필수 작성 필요
- 글로벌 진출(해외법인 설립, 수출계획, 해외서비스 런칭 등) 실적 및 계획을 작성
- 해외진출 유형을 선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

#### ○ 글로벌 진출전략 미흡시 서면평가 탈락 대상

- 추가 연계지원사업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장표 작성 필수
- 글로벌 진출(해외법인 설립, 수출계획, 해외서비스 런칭 등) 실적 및 계획을 작성
- 해외진출 유형 선택 및 구체적·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일반현황

부록1. 창업기업 및 과제요약

3. 일반현황

일반현황(추천일 기준)	
총 연구개발기간	20 . . . ~ 20 . . .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외감))
주주현황 (운영사 투자 후 기준)	[창업기업] : % (홍길동00%, 홍길순00%) [운영사] : %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 개인투자 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관 00%)
특이사항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7

- 총 개발기간
  - 팀스 개발기간(24개월) 작성
- 주주현황
  - 운영사 투자 후 기준으로 주주현황 작성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연차별 연구개발비 총괄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차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계	투자금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 )	금액					
	%					
2차년도 (20 )	금액					
	%					
합계 (금액)	금액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11

#### ○ 연차별 연구개발비 총괄

- 1, 2차년도는 운영사의 투자금에 따라 매칭되는 정부출연금,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연도별로 기재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원을 지원받는 주관개발기관 기준으로, **1차년도 300,000천원 / 2차년도 2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을 기준으로 계상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성

#### ✓ 투자금

- 운영사 투자금을 1차년도에만 기재
- 단, 차회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운영사의 경우, 2차년도 투자금 추가 기재
- 투자금은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이어야 함(투자금은 계에 미포함)

#### ○ 작성요령 :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작성

- 1차년도(만 12개월) + 2차년도(만 12개월)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비목별 소요명세(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 3-1.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1차년도)

(단위 : 천원)

인력구분	성명	직역	급여 총액 (A)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합계((A/12)*B*(C/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력	기존 참여연구자	김오오 대표						
		이오오 연구소장						
		박오오 팀장						
	소계(D)							
신규 참여 연구자	의무채용	최오오 연구원						
	청년	정오오 연구원						
	그 외	원오오 연구원						
소계(E)								
외부인력	김오오 연구원							
	이오오 연구원							
소계(F)								
총액(G=D+E+F)								

- **인건비** : 전체 사업비 100% 계상 가능 하며, 주관개발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연구원은 기존인력 또는 신규인력 구분 없이 100% 현금 또는 현물 계상 가능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 가능
  - 청년인력 외 신규인력은 참여율 90%까지 계상 가능

#### ✓ 의무 채용 청년인력

- 과제기간 내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1인 의무채용 및 유지
  -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의무채용 청년인력은 참여율 100%, 참여기간 24개월 적용 필수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비목별 소요명세(연구시설장비비)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 3-2-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장비비(1차년도)

(단위: 천원)

구분	내역(종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임차						
	통합관리비						
소계							

##### 3-2-2.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1차년도)

(단위: 천원)

구축연도	연구시설·장비명	구축방식	사용용도(규격)	수량	구축비용(천원)	구축(실시일)	설치장소

####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 보육시설 임차료 등 계상
- 임차료는 지정 보육공간(팁스타운, 운영사 BI, 창조경제혁신센터)이 아닌 곳은 불인정

단가(부가세 포함)	제출 서류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5년 이내(개발기간 포함)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연차별 계상 가능

####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 연구개발비로 구입 예정인 장비에 대한 내용 기재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비목별 소요명세(연구재료비)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3-3-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재료비(1차년도) (단위: 천원)

구분	내역(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재료비	시약, 재료 등 구입비						
	재료제작비 (시험제품·설비 등)						
소계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3-3-2.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1차년도) (단위: 천원)

구매연도	연구재료	사용용도	구입량 (g)	구매비용 (천원)	구매 (입고일)	사용처

3-3-3.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1차년도) (단위: 천원)

구매연도	연구재료제작 항목	사용용도	구매비용 (천원)	제작기간	입고일	사용처

#### ○ 연구재료비

- 시약·재료 등 구입비 및 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 연구개발비로 구입 예정인 재료에 대한 내용 기재

✓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 설비 등) 사용계획

- 연구개발비로 제작 예정인 시험제품 또는 설비 등에 대한 내용 기재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비목별 소요명세(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 3-4-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활동비, 연구수당(1차년도)

(단위: 천원)

구분	내역(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그 밖의 비용						
		소계					
연구수당		합계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그 밖의 비용 등
- ✓ **그 밖의 비용\_회계감사비용 200만원 필수 계상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내)**
- **연구수당** : 과제 수행에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등
  - 해당연도 인건비(연구지원인력인건비 제외) 20% 이내 계상
    - \* 단, 사후평가 기간을 거치지 않은 과제 중, "우수", "보통", "미흡"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해서 집행 금액 인정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 불가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비목별 소요명세(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 3-4-2.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사용계획(1차년도)

(단위: 천원)

연도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처	소요비용 (천원)	용역기간	결과물

##### 3-4-3.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그 밖의 비용) 사용계획(1차년도)

(단위: 천원)

연도	명칭 (구분)	방식	사용용도 (입체)	수량 (건)	소요비용 (천원)	사용(이용) 기간	실지장소 (결과물)

#### ○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사용계획

-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로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는 내용 기재

#### ○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그 밖의 비용) 사용계획

-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로 사용 예정인 내용 기재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비목별 소요명세(간접비)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3.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는 본 장표를 복사하여 작성

3-5.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접비(1차년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소요비용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합계		

- **간접비** : 지재권 출원·등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기술임치비, 공인인증서 발급 등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계상
  - 기술임치비용은 2차년도 간접비(연구지원비)에 30만원 필수 계상
  - 공인인증서발급비용은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10만원 선택 계상
-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사용
-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등으로 사용
-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으로 사용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회계연도별 연구개발비 현금 집행계획표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4. 회계연도별 연구개발비 현금 집행계획표(안)

(단위 : 백만원)

차수	기관구분	해당연도 총 금액(A)	연구개발기간 집행 계획 금액					집행률 (B/A*10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B)	
1 차 년 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소계							
2 차 년 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소계							
3 차 년 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소계							

#### ○ 작성요령(회계연도 기준)

- 1차년도 : 1차년도 2분기('22.05.01) ~ 1차년도 4분기('22.12.31)
- 2차년도 : 2차년도 1분기('23.01.01) ~ 2차년도 4분기('23.12.31)
- 3차년도 : 3차년도 1분기('24.01.01) ~ 3차년도 2분기('24.04.30)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소요명세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1,2차년도)

※ 본 집행계획표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집행 지	비 연구 인	내부 인건비(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B)	현금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총 인건비(E=A+B+C+D)										
	위탁연구개발비(M)										
	연구시설 장비비(F)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									
		연구수당(I)									
	직접비소계(J=E+F+G+H+I+M)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 연차는 회계연도에 따라 구분하며,

분기는 1년차를 4등분한 분기로 구분하여 작성

예)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이 '22. 5. 1~ 이라면

(1년차) 2분기 '22.5.1~6.30, 3분기 '22.7.1~9.30, 4분기 '22.10.1~12.31

(2년차) 1분기 '23.1.1~3.31, 2분기 '23.4.1~6.30,

3분기 '23.7.1~9.30, 4분기 '23.10.1~12.31

(3년차) 1분기 '24.1.1~3.31, 2분기 '24.4.1~4.30

○ 회계연도별(3차년) 연구개발비(현금)/기관부담금(현금, 현물)을

연차 별, 분기로 나누어 작성

예)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이 '22.5.1~ 이라면,

연구개발비(현금)/기관부담금(현금, 현물)을 3차년 1,2분기에 대해 작성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해당시)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위탁연구개발기관)

#### 부록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6-1. (해당시)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위탁연구개발기관)(1,2차년도)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직접비	인건비(A)	내부 인건비(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B)	외부 인건비(B)	현금								
		연구지원인건비(C)									
	학생인건비(D)										
	총 인건비(E=A+B+C+D)										
	연구시설 장비비(F)	연구시설	현금								
		장비비(F)	현물								
	연구재료비(G)	연구재료비(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H)	연구활동비(H)	현금									
연구수당(I)	연구수당(I)										
직접비소계(U=E+F+G+H+I)	직접비소계(U=E+F+G+H+I)										
간접비(K)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연구개발비 총액(L=J+K)										

####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 지급 금액(해당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 포함,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내 계상
-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접비 계상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확인 후 계상**

#### ✓ 학생인건비 :

-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를 말하며, 기업의 경우 계상 불가

#### ✓ 간접비 :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비율은 17% 이내에서 계상가능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팁스 투자계약 동의 및 추가 확약서

#### 팁스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운 영 사	
이 해 관 계 인		

**[지분합상 및 투자계약(확약)에 대한 동의]**  
 본 주관연구개발기관, 이해관계인 및 운영사는 팁스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지분합상 및 투자계약(확약)을 진행하였으며, 투자계약 내용을 포함한 아래에 대하여 상호간 인지하고 있음에 동의합니다.

내용	확인여부
지분합상 시 운영사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보육·멘토링·네트워크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무형적 지원을 통한 가치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창업기업과 운영사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한다.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투자계약에 따른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팁스 선정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위험·부담평위를 급하는 등 정당한 활동관계를 시약한다.	<input type="checkbox"/>

**[투자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  
 본 주관연구개발기관, 이해관계인 및 운영사는 20년 월 일 체결된 투자계약(확약)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계약(이하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투자계약과 본 추가 확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확약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여부
운영사는 팁스 기술개발사업 종료 이전에 팁스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 및 거짓보고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연대보증 및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운영사는 팁스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중립주식의 상환권을 팁스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후부터 행사할 것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20년 월 일

운 영 사	(운영사명)	(대표자명)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인)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 귀하**

\* 운영사·창업기업 간 체결된 계약서별 '팁스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 제출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사, 이해관계인 기재
  - 이해관계인의 경우, 팁스 추천을 위한 '**투자계약서**' 기준 정보 입력
- 확인여부 체크 필수
- '투자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
  - 추천 시 제출한 '**투자계약서(또는 확약서)**' 계약일자 기재
  - 팁스 지원을 위하여 2개이상의 계약서 제출 시, 각각의 계약일자 작성 또는 각각의 '**투자계약 동의 및 추가확약서**' 제출 필요
- 날인
  - 운영사,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계약서 기준 '**이해관계인**' 날인 필수
- 팁스 추천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또는 확약서)' 간 계약일자, 이해관계인 정보 등 내용 불일치 시,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기술교류 네트워크 계획서(해당시)

[별지 제1-②호] 기술교류 네트워크 계획서

### 기술교류 네트워크 계획서

사 업 명	팁스(TIPS) 과제		
과 세 명			
주 관 연구 개발기관 명 (창업기업)			
출 자 기 관	<input type="checkbox"/> 주간사( )	<input type="checkbox"/> 협력기관( )	
출 자 유 형	기술이전, 멘토링 등	가치평가액 (단위:천원)	
주요 출자내용			

\* 출자유형별 내용과 팁스 연구개발기간동안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재  
\* 출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

본 운영사는 위 내용과 같이 보육·멘토링·네트워크 등의 현물을 출자하고, 연구개발기간 동안 창업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에 있어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 1. 출자 계약서  
2. 가치산정 근거자료(해당시)

20    년    월    일

운 영 사 명	대표자	(인)
협력기관 명	대표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명	대표자	(인)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 귀하

※ 운영사가 컨소시엄 내 협력기관과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 출자기관

- 현물을 출자 받은 기관이 운영사(주간사)인지, 운영사 컨소시엄 내 협력기관인지 선택하여 기재

#### ○ 출자유형

- 기술이전, 멘토링, 보육공간 등 현물출자유형 기재

#### ○ 가치평가액

- 출자 받은 금액 기재

#### ○ 주요 출자 내용

- 출자 내용과 개발기간 동안 활용방안 상세 기재

- 출자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자료 첨부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별지 제1-⑩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VAT포함)		⑥ 구입국(자)	
⑦ 동업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현용 및 인차사용 불가서류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별지 제1-⑨호]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작성하고,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해 주시고, [별첨], [별첨2] 등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 본문은 휴먼영조, 11point, 줄간 160 으로 작성할 것.

#### 1. 과제 개요

사 업 명	팀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TIP8과제)		
과 제 명			
기 관(업) 명		과 제 번호	

#### 2.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구분	내용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예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소분류"기호로 작성 (예) A22-후파전자현미경		
시설장비명	연급	예 연구시설·장비 목론 명칭을 기치	
	영분	예 연구시설·장비 명문 명칭을 기치	
담당자	소속	연차제	이메일
	연차제	연차제	연차제
제조사 및 모델명 (10년이상이면 작성시 및 도입일자를 2기 이상 작성)	제조사명	제조사명	모델명
	제조사명	제조사명	제조사명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구축일정	연도별구분 YYYY-MM-DD ~ YYYY-MM-DD		연도별구분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원시제정 지역명		원시제정 지역명
시설장비 용도	예 장비의 측정 목적, 필수일용, 취득하고자 하는 성과물 등 지배하게 기치		
	분석	시험	교육
주요사항	예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치		
	예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기치. 용역의 목적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치		
예산장비 도입 필요성	예 제작사가 외곽기업인 경우 작성		

[별지 제1-⑧호]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작성 견적서 반드시 첨부할 것  
\* 본문은 휴먼영조, 11point, 줄간 160 으로 작성할 것.

#### I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금액	비고 (예외일부,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예외일부도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교연에 자체부담금을 적성 요망
-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교연에 총금액과 연도별도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적성 요망
- ※ 임대일 경우 비교연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적성 요망

[참고]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분.

-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 서류 작성시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해당시)

[별지 제1-⑩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 20 . . . . (년 월)	
	1차년도	20 . . . . ~ 20 . . . . (년 월)	
	2차년도	20 .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차년도	(사용불가)			
2차년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불가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차년도	품목명			
2차년도	품목명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 수정 불가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운영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개발기관 : (직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 ※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제출

-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할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 필요
- (품목명)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
  -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 **"사무용"을 기재**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 **"환경유지"를 기재**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 창업기업 추천서류 작성 방법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별지 제1-9호]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기술도입비 현물은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제부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협약기간					
기관부담(현물)	기술도입비 현물 신청액(원)		기술도입액(원)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현물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거래 사실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아래 -

- 기술양도자 : 기업/기관명(                    )
- 기술도입자 : 기업/기관명(                    )
- 기술거래 유형 :
  - 특허권 00건 양수(○, x)
  - 특허출원번호/발명명칭 :
  - 기술실시권(라이선싱) 00건 확보(○, x)
  - 특허출원번호/발명명칭 :
  - 인수합병(○, x)
  - 특허출원번호/발명명칭 :
- 기술거래 계약체결일 : 0000년 00월 00일
- 기술도입 비용 지급일/금액
  - 0000년 00월 00일 / 0000원
- 현물부담 신청액 : 0000원
- 신청 연구개발과제와 도입기술의 관련성
  - \* 평가위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현물기술과 동과제간 필수직접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것
    - 도입기술의 주요내용
      - 기술개요, 특징, 장점 등
    - 과제와 도입기술의 관련성
      - 직접성(동 과제와 현물기술의 직접관련성) :
      - 필요성(동 과제의 현물기술 활용 필수성) :
      - 효과성(도입기술 적용 효과성. ex. 기술적 효과, 개발기간단축, 비용절감 등) :

필수첨부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1부.  
기술도입비용 지급확인서(송금증) 1부.

20    년    월    일

현물부담 신청 연구개발기관 :                    (인)

※ 외부 기술 도입에 대한 내용을 현물로 계상할 경우 제출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 필요

#### ○ 신청 연구개발과제와 도입기술의 관련성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현물 기술과 동 과제 간 연관성,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 기재 필요

## 5. 연구개발비(R&D)

---

## 연구개발비 구성 현황

□ 연구개발비(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금(현금, 현물)

보육 기간	엔젤투자금 (팁스운영사)	연구개발비(R&D) (A+B)			추가 연계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A)	기관부담연구개발금 (B)		
			현금	현물	
2년 (최대3년)	1~2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최소 20%* 이상)	최대 5억	해당금액	해당금액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기술개발자금의 90%이내	기술개발자금의 10%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의 10% 이상)		

\*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은 1억원 내외, 펀드형은 2억원 내외)

\*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운영사 인정 투자금의 5배 이내, 최대 5억까지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금 = 9 : 1
  - 기관부담연구개발금은 기술개발자금의 1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금(현금)은 기술개발자금의 10% 이상 계상 필수
  - \* 정부출연금 5억원 확정 창업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 5,557천원, 현물 50,000천원 이상 구성 필수
  - 기관부담연구개발금(현금)은 운영사 투자금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 협약기간 및 회계연도별 기준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지급

연구개발기간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A. 협약기간 (24개월)	2022.05.01~2023.04.30		2023.05.01~2024.04.30	
금액	300,000천원		200,000천원	
B. 회계연도일치 (연구개발비 지급기준)	2022.05.01~ 2022.12.31	2023.01.01~2023.12.31		2024.01.01~ 2024.04.3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67,500천원	250,000천원		82,500천원
A+B	2022.05.01~ 2022.12.31	2023.01.01~ 2023.04.30	2023.05.01~ 2023.12.31	2024.01.01~ 2024.04.30
실 지급금액	167,500천원	132,500천원	117,500천원	82,500천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1차 (현금 3,334천원 현물 30,000천원 이상)		2차 (현금 2,223천원 현물 20,000원 이상)	

※ 운영사에서 창업기업 진도점검 후 운영기관으로 연차점검 결과(창업기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제출 및 SMTECH 연차보고서 제출



## 6.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통합평가

---

## ■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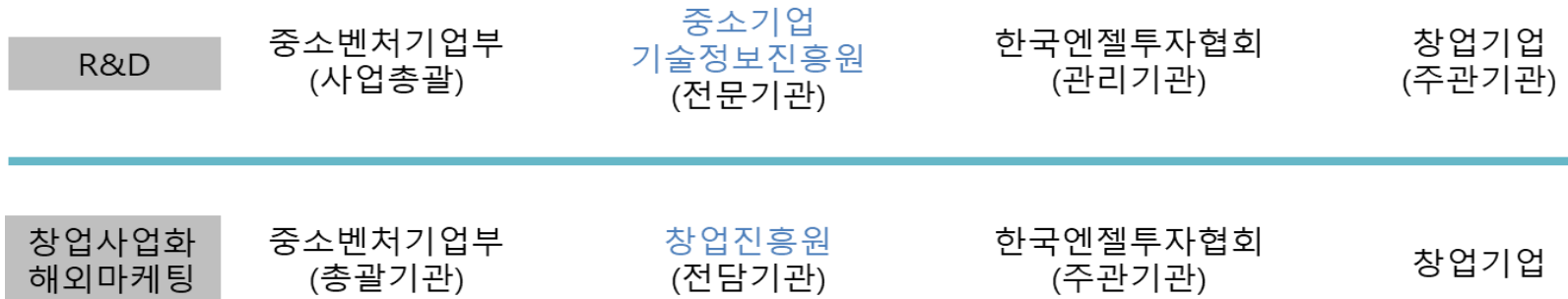
### □ 목적

- 팀스 R&D에 선정된 기업 중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개발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자금 지원

### □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해외 판로개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최대 1억원 지원(10개월)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 내 차등 지원

### □ 추진체계 및 용어



##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통합평가 선정 절차



##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청 방법 안내

### ✓ 연계사업 신청여부 필수 확인

팁스(TIPS) 기술 창업기업 추천서				
		<input type="checkbox"/> 연계사업신청	<input type="checkbox"/> 창업사업화	<input type="checkbox"/> 해외마케팅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중소벤처기업		
연락처(☎)	이메일			
과제명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소	원소재지 기재			
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입주예정지(☞)	<input type="checkbox"/> 팁스타운 <input type="checkbox"/> (타)운영사 BI <input type="checkbox"/> 창조경제혁신센터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서울·인천·경기 제외) 확약 (2점) * 본사기준 <input type="checkbox"/> 내일채움공제 도입 (1점)			
가점 해당사항 (최대 3점)	<input type="checkbox"/>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공' 편정 기업 (1점) [신성장 육성 분야 (1점) * 해당사항 모두 기입 가능]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분야 - 전략중속)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분야 - 전략중속) <input type="checkbox"/>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흥기술)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투자재원	운영사투자금	창업기업투자금
	1차	<input type="checkbox"/> 고유 계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2차	<input type="checkbox"/> 예청 <input type="checkbox"/> 고유 계정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형		운영사 투자금 포함
주주현황 (자본% 목적)	투자前		투자後	
	구분	주주명	지분율	목적
	창업기업			창업기업
	기타			기타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운영사 투자재원의 특성(재원 성격, 펀드 경우 모태 비율 등)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학·출연연 기술이전/출자(연출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추진 기업일 경우,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에 프리팁스 신청 시 증빙한 투자이력에 한함,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은 총 운영사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운영사 투자금은 합산하여 기재 가능 <input type="checkbox"/> 회사 구조·기업경영 등에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경우 창업준비와 관련된 내용 기재 가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준을 준수하여 팁스 기술창업기업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운영사 : _____ 운영사 대표자 : _____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연계사업신청

- 연계사업 신청시에만 신청 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을 정확하게 체크(중복 신청 가능)

※ 추천서 내 신청체크 및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계사업 작성 양식 페이지를 동시에 제출해야 통합평가 신청으로 인정

- 창업사업화 신청 시 : 추천서 내 '창업사업화' 체크 및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2.사업화 계획 페이지 필히 작성

- 해외마케팅 신청 시 : 추천서 내 '해외마케팅' 체크 및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3.글로벌 진출전략 페이지 필히 작성

## ■ 창업사업화 서류 작성 안내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사업화 계획

#### III. 사업화 전략 (Scale-up)

##### 2. 사업화 계획

<창업사업화 추진목표 및 계획> (추가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신청시만 작성)

추진목표	세부내용
시제품 제작 완료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매출증대	국내 마케팅을 통한 매출 달성

<사업화 추진일정>

추진기간	사업추진 내용(과업)	비고
21.3 ~ 22.3	(시제품,서비스,플랫폼) 제작	
21.3 ~ 21.4	(시제품,서비스,플랫폼) 판로확보	

##### • 작성요령

- ※ "(추가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신청 시) <창업사업화 추진목표 및 계획>" 작성요령
  - 창업사업화 협약기간(10개월) 동안의 달성 가능한 사업화 추진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 (예. 시제품제작, 제품기능 보완, 제품홍보·마케팅, 판로확보, 홍보물(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등)
  -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추진기간 제시
  - 사업목표 및 과업의 수행여부는 창업사업화의 성공, 실패 평가기준으로 적용
- ※ <사업화 추진일정> 작성요령
  - 시장 및 경쟁사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진입에 대한 전략을 상세히 서술
  - 기술개발 최종산출(제품, 서비스 등)의 양산, 마케팅, 판매전략 등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제시
  -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전·임상시험 및 인증에 대한 세부계획을 기재

- 사업화 계획 및 추진일정을 통해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창업사업화 수행기간 10개월)
- 창업기업의 사업화 계획(판로확보, 마케팅(홍보),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추진일정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기재한 내용은 창업사업화 종료 후 최종평가시 평가기준(목표 및 계획의 달성 여부)으로 적용

## ■ 창업사업화 서류 작성 안내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부록 – 창업지원 사업(사업화) 참여실적, 사업비 소요명세서

※ 추가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신청 시 작성

2-1. 창업지원 사업(사업화) 참여실적<sup>(추가 연계지원사업 미신청 시 해당 페이지 삭제)</sup>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처/기관)	과제명	승계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천원)	과제현황		
					완료	진행중	신청중
1	예)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중소기업진흥공단)		15.1.1 ~ 16.12.31	50,000	○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현황을 확인

• 작성요령

- 창업팀(주관기관)에서 수행한 창업지원 사업(사업화) 참여실적을 기재
- 창업팀이 신청·진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표시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5

- 타 창업사업화 과제의 수행기간과 중복될 경우, 본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
- ※ 『2022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참조
- 틱스 선정 확정 후 창업사업화 협약체결 과정에도 중복수행내역 발견 시 선정 제외

※ 추가 연계지원사업 신청 시 작성

1. 창업사업화 사업비 소요명세서<sup>(추가 연계지원사업 미신청 시 해당 페이지 삭제)</sup> (단위: 천원)

비목	산출근거	정부지원금 (A)	창업자 부담금(B)		합계 (A+B)
			현금	현물	
재료비	부품, 시약 등				
외주용역비	용역이지 계약 등				
기계장치구입비	기계 임차비용 등				
무형자산 취득비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등				
인건비	개발자 1명 X 장여를 100% X 12개월				
지급수수료	회화·세미나 참가비용 등				
여비	국·내외 교통실행				
교육훈련비	기술교육 등				
광고선전비	홍보물 제작 등				
	합계				

• 작성요령

- 사업비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구입비,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중에서 필요한 비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기재
-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창업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
-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인건비는 타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4

- 창업사업화 사업비 소요명세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의 적합성 판단
- ※ 표의 비목과 산출 근거는 창업사업화 사업비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총사업비(100%) = 사업지원금(70%이하)  
+창업기업대응자금(현금(10%이상), 현물(20%이하))
- 지급수수료(회계감사비) 30만원 필수 계상

## ■ 해외마케팅 서류 작성 안내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 글로벌 진출전략

#### III. 사업화 전략 (Scale-up)

##### 3. 글로벌 진출전략 ※ 추가 연계지원사업 미신청시 해당 페이지 삭제

<해외마케팅 추진목표 및 계획> (추가 연계지원사업(해외마케팅) 신청시만 작성)

해외진출권역	□ 북미권	□ 중화권	□ 기타(동남아, 일본 등)
해외진출국가			
추진목표	세부내용		
해외법인설립	협약기간 내 현지 법인 설립		
해외인증취득	희망진출국의 국가별 기준에 따른 인증 취득		
추진기간	사업추진 내용(과업)		비고
'20.4 ~ '20.7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현지 법률자문 및 시장조사		
'20.8 ~ '20.10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해외투자유치		
'20.12 ~ '21.2	해외 전시회 참석을 통한 자사 제품홍보		

##### • 작성요령

- ※ "(추가 연계지원사업(해외마케팅) 신청 시) <해외마케팅 추진목표 및 계획>" 작성요령
- 해외 진출권역을 선택(복수 불가)하고 권역에 따른 세부 희망진출국가 작성
- 해외마케팅 협약기간(10개월)동안 달성 가능한 글로벌 진출 추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
-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추진기간 제시
- 사업목표 및 과업의 수행여부는 해외마케팅의 성공, 실패 평가기준으로 적용

- 희망 진출권역 복수선택 불가
- 글로벌 진출 전략 및 진출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해외마케팅 수행기간 10개월)
- 창업기업의 해외마케팅 계획(판로확보, 마케팅등)에 대한 추진 일정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기재한 내용은 해외마케팅 최종평가 시 평가기준 (목표 및 계획의 달성 여부)으로 적용  
※ 타 글로벌진출 과제의 수행기간과 중복될 경우, 본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

## ■ 해외마케팅 서류 작성 안내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부록 – 사업비 소요명세, 해외 진출 현황

※ 추가 연계지원사업 신청 시 작성

**2. 해외 마케팅 사업비 소요명세**(추가 연계지원사업 미신청 시 해당 페이지 삭제) (단위: 천원)

비목	산출근거	정부지원금(A)	창업자 부담금(B)		합계(A+B)
			현금	현물	
재료비	부품, 시약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				
기계장지구입비	기계 임차비용 등				
무형자산 취득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등				
인건비	(창업인력 명) 월 급여 X 참여율(%)X 12개월				
지급수수료	해외 전시회 및 학회 참가비용 등				
여비	국·내외 교통상비				
교육훈련비	해외 진출 및 마케팅 관련 교육 등				
광고선전비	홍보물 제작 등				
	합계				

**작성요령**

- 사업비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지구입비,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중에서 필요한 비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기재
-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창업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
-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인건비는 타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5

- 해외마케팅 사업비 소요명세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의 적합성 판단
- ※ 표의 비목과 산출 근거는 해외마케팅 사업비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총사업비(100%) = 사업지원금(70%이하)  
+ 창업기업대응자금(현금(10%이상), 현물(20%이하))
- 지급수수료(회계감사비) 30만원 필수 계상

※ 추가 연계지원사업(해외마케팅)

**2-2. 해외 진출 현황**(추가 연계지원사업 신청시 필수, 미신청 시 해당되는 내용 기재)

	국가(지역)	진출유형	진출일자
해외진출 현황	예) 미국(캘리포니아)	현지법인/합작법인/지점/연락사무소	2019.1.1.
해외진출 희망국가(지역)	1순위 예) 인도(벵갈루루)	2순위 영국(런던)	3순위 프랑스(파리)
해외 투자유치 현황 (창업이후)	투자사정(국적) 예) 000Partners (미국)	투자계약 체결일 2020.01.01	투자금액 \$100,000
수출실적 (창업이후)	수출국가 예) 미국	수출금액(수출년도) \$1,000(18년)	수출품목
글로벌 피칭대회 참가 현황	참가년도 예) 2019	참가행사명 Slush Helsinki	수상내역 TOP 50 진출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실적	참가년도 예) 2019	국가(지역) 미국(캘리포니아)	보육 액셀러레이팅 Y-combinator
기타 추진 성과	예) 해외특허권수, 국제인증 견수 및 종류, 국제 협력체결 견수 및 내용 기재		

\* 필요 시 칸을 추가하여 기재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6

- 해외마케팅 신청 기업의 경우 필수 작성
- 해외진출 희망 국가의 경우 필수 작성
- 그 외 항목에 대한 현황은 없을 경우 '-' 표시



## ■ 연계사업 참고사항

1.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화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확인이 어렵거나, 연계사업 협약기간(10개월) 內 목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팁스에 선정되더라도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선정 제외될 수 있음.**
2. 팁스선정기업이 **별도평가\***를 희망할 경우, 기존 미수혜기업과 함께 별도평가 진행  
\* (별도평가) 팁스(R&D) 성공 졸업기업 및 수행기업 중 연계지원사업 미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및 선정평가 절차 진행
3. 사전 서류검토 또는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도 연계사업의 지원자격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으며, 해당 창업기업에게 별도로 안내 지원 제외는 팁스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에만 해당되며, **팁스 R&D 선정유무 및 선정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없음**
4. 향후 팁스 R&D 선정 및 연계지원사업 지원자격이 충족될 경우 재 지원 가능
5. 해외 마케팅의 경우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성을 검토



# 감사합니다

[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T

I

P

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